

『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1년 8월 27일

인천광역시의회 의장

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가. 상위법령인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37조의 조제목인 “환경보전자문위원회”가 “환경정책위원회”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제명 변경 및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며
- 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에 의거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, 임의 조례위원회인 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”를 법령상 강행위원회인 “환경정책위원회”로 통합,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환경정책기본법」 개정으로 “환경보전자문위원회”가 “환경정책위원회”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, 위원회의 조례 제명 및 문구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함(안 제목 및 제1조)

- 나. 통합 위원회 기능의 적절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30명 이내의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 활용하도록 함(안 제3조)
- 다. “환경정책위원회” 기능에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여 그 기능을 확대함(안 제4조)
- 라. “환경정책위원회”의 회의 개최 및 의결 방법을 각각 규정하고자 함(안 제7조)
- 마. 「행정기구 설치조례」의 개정 및 통합 위원회의 기능에 맞게 간사 및 서기의 직명을 규정함(안 제8조)
- 바.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라 타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을 부칙에 규정하고자 함(안 부칙 제2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5일(목)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(참조 :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35, 팩스 032-440-876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 주 소: ○ 성 명: ○ 연락처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 1부.

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20인”을 “30명”으로 한다.

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

제7조제3항 중 “의결한다”를 “의결하되, 제4조 5호에 따른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환경보전과장”을 “환경정책과장”으로, “환경기획업무담당사무관”을 “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「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」를 「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, “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”를 “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</u> <u>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</u>	<u>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</u> <u>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<u>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</u>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〈삭제 2003-10-27〉 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<u>20인</u> 이내로 구성한다. ② ~ ④ (생략) 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 1.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. 지역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.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. 〈삭제 2003-10-27〉	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</u>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 제3조(구성) ① ----- ----- <u>30명</u> ----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4조(기능) 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 5.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장 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7조(회의) ① ~ ② (생략)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<u>의결</u> <u>한다.</u> ④ (생략) 제8조(간사와 서기) ① (생략) ② 간사는 <u>환경보전과장</u>이 되고 서기는 <u>환경기획업무담당사무관</u> 이 된다.	5. <u>환경영향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</u> 6. (현행과 같음) 제7조(회의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<u>의결</u> <u>하되, 제4조 5호에 따른 회의는</u> <u>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</u> <u>지명하는 해당분야 전문가를</u> <u>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</u> <u>구성한다.</u> ④ (현행과 같음) 제8조(간사와 서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환경정책과장</u> ----- ----- <u>담당사무관</u> -----

관련법령 검토 및 발체사항

관련법령	☐ 환경정책기본법 ○ 제37조(환경정책위원회) ☐ 지방자치법 ○ 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☐ 지방자치법 시행령 ○ 제80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☐ 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○ 제3조(구성) ○ 제4조(기능) ☐ 인천광역시 환경·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 ○ 제12조(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) ☐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○ 제3조(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☐ 인천광역시 환경·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 ☐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
관련자료	“해 당 없 음”

관련법령 발췌사항

□ 환경정책기본법

제37조(환경정책위원회) ① <생략>

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시·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시·군·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③ <생략>

④ <생략>

⑤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제2항에 따른 시·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·군·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 및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<전문개정 2010-2-4>

□ 지방자치법

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80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(이하 "자문기관"이라 한다)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
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□ 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

- 제3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- ③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3인으로 하며, 여성가족국장, 도시계획국장,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.<개정 2010-2-22><개정 2011-2-14>
-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.)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
1. 환경보전 또는 국토·도시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 2.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
 3. 인천광역시의회 의원
 4. 시민단체(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자

제4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<개정 2003-10-27>
2. 지역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<개정 2003-10-27>
3. 특별대책 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4. <삭제 2003-10-27>
5.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개정 2003-10-27>

□ 인천광역시 환경·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

- 제12조 (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) ①인천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(이하 “환경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상 4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환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07-03-26>
- ② 환경위원회의 위원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별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④ 환경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위원회를 대표하고 환경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- ⑤ 환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⑥ 환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포함한

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07-03-26>

⑦ 환경위원회의 구성, 운영 및 심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□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

제3조 (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) ① <생략>

② 시장이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·구청장의 의견을 듣고, 「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」에 의한 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.<개정 2007-05-14>

③ ~ ⑤ <생략>